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

사업개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금의 종류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공통 적용 사항	지원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를 제외한 외국인* *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새로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6.1.1.이전인 경우: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1.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① 육아휴직특례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부여시 첫 3개월 동안은 “특례지원금”으로 지급함 ※ 육아휴직 특례지원금 <table><tr><th>구분</th><th>지원금액</th></tr><tr><td>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td><td>첫 3개월: 월 1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td></tr><tr><td>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td><td>첫 3개월: 월 2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td></tr></table> 《만12개월 이내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특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1) A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5.3.1.~2026.2.28.(12개월)]인 경우, ⇒ 첫 3개월(2025.3.1.~2025.5.31.)은 월 200만원, 나머지 기간(2025.6.1.~2026.2.28.)은 월의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2) B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6.3.1.~2027.2.28.(12개월)]인 경우, ⇒ 첫 3개월(2026.3.1.~2026.5.31.)은 월 100만원, 나머지 기간(2026.6.1.~2027.2.28.)은 월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구분	지원금액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첫 3개월: 월 2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
	구분	지원금액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첫 3개월: 월 200만원 지급 (나머지 기간은 월 30만원 지급)							

②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1.1.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함)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부여한 횟수도 판단 시에 포함됨)

[육아휴직 지원금 연간 지원액]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육아휴직 시작일 '26.1.1.이후: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 '26.1.1.이전:	월 200만원		87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원			120만원

3.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함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7.1.이후인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사정(상실사유: 11.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4. (지원금 신청 기간)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제척기간)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육아휴직 시작일이 '25.7.1. 이후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근속하기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1) A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6.3.1.~2027.2.28.(12개월)]인 경우,

⇒ '26.3.1.~'26.5.31.(3개월) 기간에 대해 '26.6.1.'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27.5.31.)에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예시 2) A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026.3.1.~2027.2.28.(12개월)]인 경우,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2027.9.1.' 이후 한꺼번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지원금 지원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5.2.23. 이전 최대 1년, 이후 최대 1년 6개월)

6.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② 등기우편 접수

③ 방문(창구) 접수

* 안양고용센터 주소: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2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7. (제출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24 접수 시 불요)

- 지원금의 50% 신청: 사업주 또는 육아휴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나머지 50% 신청: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에 대한 증빙 서류(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신청서나 육아휴직 확인서 등)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지원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최초로 허용하여 세 번째 사례까지는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 연간 지원액]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까지)	10만원	120만원

3.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함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7.1.이후인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사정(상실사유: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 경우)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4. (지원금 신청 기간)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제척기간)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25.7.1. 이후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근속하기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5. (지원금 지원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5.2.23. 이전 최대 2년, 이후 최대 3년)

6. (지원금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② 등기우편 접수
 - ③ 방문(창구) 접수
- * 안양고용센터 주소: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2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7. (제출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24 접수 시 불요)

- 지원금의 50% 신청: 사업주 또는 육아휴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나머지 50% 신청: 재직증명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증빙 서류(예: 인사발령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대체인력지원금

1. (지원 대상)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요건 등)

① 대체인력의 채용일 (고용시점)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예시) A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6.3.1.」일 때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란,
⇒ 「2026.1.1.」 이후 새로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경우를 의미함

② 고용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권고사직) 제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예시) “대체인력의 고용일”이 「2026.2.1.」인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의 기간은 [2025.11.2.~2027.1.31.]까지임

※ 고용조정제한기간을 위반할 시 대체인력지원금 부지급 및 기지급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함

③ 육아휴직 특례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육아휴직 특례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가 없고(육아휴직 일반지원금 ‘월 30만원’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1개의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원금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육아휴직 특례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함

④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의 채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지원함

3. (지원 기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전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고시 규정
(인수·인계기간 추가 지원)

육아휴직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직하고,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부터
최대 1개월 추가 지원

4.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지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지원
	▶ 30인 기준: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중 피보험수가 작은 일자 기준	
	‘25.1.1.~’25.12.31.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	2025년·2026년도 동일	월 최대 120만원 지원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지원금의 지급)

구분	지원금의 지급방식
2026.1.1.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	제도 사용 기간 내에 지원금의 100%를 지급함
2026.1.1. 이전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	-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 나머지 50%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함

6. (지원금의 신청 기간)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제척기간)

7. (지원금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② 등기우편 접수
- ③ 방문(창구) 접수

* 안양고용센터 주소: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2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8. (제출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24 접수 시 불요)

- 사업주 또는 근로자(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와 대체인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1부 (최초 신청시 제출)
-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 지급내역 (신청시마다 제출)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o 업무분담지원금

1.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단축인 경우 지원)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기준(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되,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아래의 기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한도
	▶ 30인 기준: 「육아휴직 등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피보험수가 작은 일자 기준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한도
	‘25.1.1.~’25.12.31.	월 최대 20만원 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2025년~2026년도 동일	월 최대 20만원 한도

3. (지원금 신청 기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제척기간)

4. (지원금 지원 기간)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5. (중복지원 제한)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함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분담지원금)]

② 등기우편 접수

③ 방문(창구) 접수

* 안양고용센터 주소: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2층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7. (제출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24 접수 시 불요)

- 사업주 또는 근로자(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와 업무분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업무분담자 금전적 지원 확인 서류

① 급여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② 급여이체내역 등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인사발령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